

|          |      |
|----------|------|
| 의안<br>번호 | 2770 |
|----------|------|

## 의장직 사임서

본인은 종로구의회 의장 선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장선출을 진행했다고 확신하고 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 판결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하지만, 민생회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지금의 엄중한 현실에서 최종판결까지 종로구의회 지도부의 공백상태에 따른 고통을 우리 구민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르렀으며, 본안소송에 앞서 모든 의장단과 위원장 직을 사임하기로 결단하고 시급히 종로구의회 원을 재구성해 의회를 정상화할 것을 야당에 제안하였기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조례」 제22조에 의거하여 종로구의회 의장직을 사임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 명 : 라 도 군
2. 소 속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3. 직 책 : 종로구의회 의장

2023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라 도 군

(서명)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귀하